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검 토 보 고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금지 및 규제 등〉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27호)

2026.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 괄	4
가. 제정안의 입법배경 및 취지	4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6
다. 혐오표현 규제 관련 해외 사례	8
라. 관계 부처의 의견	10
마. 제정의 필요성 검토	11
2. 제정안의 조문별 검토	15
가. 총 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5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20
다. 혐오표현의 규제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2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후덕 · 이병진 · 김주영 · 김정호 · 이재강 · 강선우
김태선 · 박수현 · 박지원 · 최혁진 · 임미애 의원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26.

3. 회 부 일 : 2025. 12. 29.

※ 의안번호 : 156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신국이나 국적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비하, 모욕 등 혐오표현이 빈발하면서 외국인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2025년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 하기도 함.

이러한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해 공동체

간 신뢰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율하는 일반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

-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위협하는 행위
-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나.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안 제9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가. 제정안의 입법배경 및 취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출신 국가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5년 5월 「대한민국 제20-2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특히, 이주민, 난민신청자, 난민, 중국계 사람에 대한 인종주의적 증오발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반복’하면서, ‘특히, 대구시에서 모스크 건립 반대의 맥락에서의 무슬림 공동체를 향한 증오발언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감금 및 협박하고 그 학대 비디오를 인터넷에 게시한 보고에 대하여 주목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¹⁾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하여, ① 혐오표현은 그 대상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② 혐오표현은 공론장을 왜곡하고 그 결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③ ① 및 ②의 해악성이 결합되어 궁극적으로 혐오표현 대상집단에 대한 차별 공고화와 불

1) 「대한민국 제20-2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p.4

평등 지속의 효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²⁾

한편,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혐오표현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형법」·「민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의 관련 조항을 통하여 부분적·간접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³⁾ 즉, 현행 법체계는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수단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있으나 혐오표현으로 인한 집단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기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⁴⁾

이에 제정안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한 개별법을 마련하여 혐오표현의 정의, 혐오표현 금지의무, 혐오표현의 구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행정적 수단을 통하여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정치인의 혐오표현 예방·대응 의견표명”, 2019. 12. 24.

3) 예를 들어, 「형법」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통하여 특정 개인 또는 일정 특성을 가진 집단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 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한 비하나 모욕적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차별적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며,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심의규정은 방송·통신 매체를 통한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등 분야별 규제가 산재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혐오표현이 차별행위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비하적 내용을 담은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4) 송현정,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국내외 법제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54집제1호(2025. 10.), pp.409~413

나.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본칙 3개 장 10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제정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둘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특정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2조 및 제3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혐오표현의 방지 및 피해규제 책임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넷째, 혐오표현을 당한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관련 권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표-1] 제정안의 조문 체계

본 칙(3개 장 10개 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혐오표현의 금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혐오표현의 규제 등	제8조(진정)
	제9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부 칙(1개 조)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 혐오표현 규제 관련 해외 사례⁵⁾

미국은,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 형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행정 영역에서 차별금지 제도를 강화하였음. 연방대법원은 1969년 *Brandenburg v. Ohio* 판결에서 KKK연설 사건을 계기로 ‘직접적이고 임박한 불법행위의 선동’만 처벌 가능하다는 기준을 확립하여 추상적인 증오발언은 설령 인종차별적이라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음. 민사적·행정적 차원에서 1964년 「민권법」을 비롯한 연방 및 주 차원의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인종, 종교, 성별, 출신국가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고용·교육·주거·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혐오표현이 서비스 거부나 고용 배제 등 차별행위로 구체화될 때 민사적·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강력히 규율하는 구조를 취함.

영국의 경우, 형사적 차원에서는 「공공질서법」에서 ‘인종적 적대감을 고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거나 모든 정황상 인종적 적대감이 유발될 것 같은 경우로서 위협적, 매도적, 모욕적인 말, 행동, 글을 공개하는 경우 및 종교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위협적인 말 또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글을 공개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민사적 차원에서는 「평등법」에서 고용·교육·재화·서비스 제공 영역에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데, 언어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님.

5) 송현정, 「혐오표현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시론적 고찰-국내외 법제 및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54집제1호(2025. 10.) ; 조규범,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현안보고서 제30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2019 ; 「주요 국가에서 혐오표현 규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2026. 1. 16.

독일의 경우, 형사적 차원에서는 「형법」상 대중선동죄, 집단적 모욕·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혐오표현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민족·인종·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집단학살, 홀로코스트 역사의 부정, 나치의 국민사회주의를 찬양하여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 국민 일부를 대상으로 증오를 선동하거나 피해 집단을 모욕하고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함. 민사적 차원에서는 혐오표현을 독립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일반평등대우법」에 따라 차별 행위와 결합된 경우에 한정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인정함.

프랑스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에서 ‘민족, 국가, 인종, 종교, 성, 성적지향, 성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그리고 민족, 국가, 인종, 종교에 속하는지 유무를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거나, 성, 성적지향, 성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적대감 및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하여 차별적 의식을 조장 또는 유발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혹은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을 고지하거나 그들을 지역 사회로부터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규제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라. 관계 부처의 의견⁶⁾

제정안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환경에서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할 때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나,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 6. 일부개정, 2026. 7. 7. 시행)되어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 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①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②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추가됨에 따라,⁷⁾

해당 유형의 온라인상 표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시정요구·차단 등의 조치를 수행하므로 제정안에 따른 규제 체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규율 체계와 중복·혼선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⁸⁾

6)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의견이 없다는 입장임.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8) 참고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혐오표현 개념을 법률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명확성 원칙,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성격, 기관 권한 배분 등의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 제정의 필요성 검토

제정안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정의, 금지의무 및 구제 등을 규율하는 개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또는 집단을 낙인찍고 배제하고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고착시킬 수 있는 혐오표현을 행정적 수단을 통하여 규제하려는 것으로서,

혐오표현 대상 개인 및 집단을 혐오표현의 해악인 인간존엄성 부정과 개인적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집단적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혐오표현의 규제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혐오표현의 해악을 강조하거나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권을 강조하면서 규제에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혐오표현 문제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혐오표현 규제는 민주적 자기통제이론 또는 개인의 자기실현에 반하며 규제 효과가 없어서 더욱 강력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규제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⁹⁾

참고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향은 형사적 대응보다 정책적 대응을 통하여 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양산되

9) 음선필,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제26권제1호(2025. 2.), p.392

지 아니하도록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존재함.¹⁰⁾

둘째, 혐오표현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거나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¹¹⁾이 제기되고 있음. 즉, 혐오표현 또한 표현의 일부로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나 제한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임.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제2항¹²⁾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음.¹³⁾

해당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등의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적

10) 「주요 국가에서 혐오표현 규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2026. 1. 16.

11) 임형국,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확장 과 괴롭힘 규정 신설 필요성」, 평등권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발제자료, 2025, p.13

12)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3)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차별·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차별·혐오표현’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백한 관념이 아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떠나 규명될 수 없다. (중략)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표현이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표현내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발화 즉시 표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고취시킴으로써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차별·혐오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이는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되므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

언어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¹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이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¹⁵⁾ 등을 들어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였다고 판시하였음.

셋째, 입법 형식과 관련하여, 제정안과 같이 혐오표현의 규제를 위한 개별법을 따로 제정하게 되면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입법 목적을 보다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5조부터 제7조까지)¹⁶⁾, 시정명령(제9조) 및 이의신청(제10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정안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도록 규정(제4조)하고 있고 혐오표현에 대한 진정·권고 등이 「국가

1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어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참고로,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시정명령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16) 다만, 제정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율 사항과는 다소 이질적 내용임.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제8조 및 제9조)하고 있어, 입법 경제상 효율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직접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제정안의 조문별 검토

가. 총 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정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 제3조는 혐오표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4조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¹⁷⁾

[표-2]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혐오표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17)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정 안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제3조(혐오표현의 금지)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먼저, 제정안은 제명을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에 따른 혐오표현의 사유 중 ‘출신 국가’만을 대표로 명시하여 제명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규율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의 사유가 출신 국가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외 혐오표현의 사유(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도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출신 국가 다음에 ‘등’자를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제명을 풀어서 표현하는 경우에는 「○○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혐오표현 규제법’을 ‘혐오표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2조는 혐오표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행위’로서,

①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 ②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위협하는 행위, ③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④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한편, 혐오표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있지 아니하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는 하나,¹⁸⁾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정리하였음.¹⁹⁾

18) ○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의 고무에 근거한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 인종차별을 주장·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유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기타 다른 정체성 요인에 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멸적이거나 차별적 언어 혹은 공격으로 말, 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표현(유엔 혐오표현 대응 행동전략·계획)

○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나 신념, 국적이거나 출신국가·민족, 혈통, 나이, 장애, 성,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이나 지위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비하나 이를 옹호·증진·선동하거나, 적대·비방, 괴롭힘, 모욕, 부정적 고정관념, 낙인찍기나 위협 및 이러한 모든 표현을 정당화하는 표현(유럽인종차별위원회 일반정책권고 제15호)

○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보고서」)

첫째,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속성 즉, 혐오표현의 사유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한 혐오표현의 개념에서는 혐오표현의 사유를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음.²⁰⁾

반면, 제정안은 혐오표현을 정의하면서 혐오표현의 사유를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으로 규정하여 출신 국가와 연관된 사유를 중점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는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과의 관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이주민·난민 등에 대한 증오발언 증가에 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규율 대상 혐오표현을 출신 국가와 관련된 사유로 좁게 설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이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은 제정안의 혐오표현의 사유에 포섭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혐오표현의 개념 요소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한 혐오표현 개념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i) 어떤 속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ii)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

19)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2019, p.12

20)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사유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임.

을 바탕으로 대상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전·선동하며, iii) 대상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아닌 언어 등을 사용한 언동이고, iv) 표적이 되는 대상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가짐.

따라서, 제정안의 혐오표현의 정의가 혐오표현의 개념에 부합되게 규정되어 있는지, 혐오표현의 정의에 포함된 각 행위 유형이 혐오표현의 개념 요소를 적절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각 행위 유형 간 중첩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지막으로, 제정안 제4조는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부분은 제정안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른 혐오표현의 정의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해당 부분은 삭제하여 법문 표현을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음.²¹⁾

21) 안 제4조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제 정 안	수정의견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출신 국가 및 국적·지역·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u>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혐오표현의</u>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정안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구제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6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7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3]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혐오표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규제를 위한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오표현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혐오표현 규제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
3. 혐오표현 방지와 대처를 위한 교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주요 시책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

제 정 안

다)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방식에는 ① 형사적 · 민사적 · 행정적 수단을 통하여 혐오표현을 직접 금지하는 ‘행위 규제’와 ② 혐오표현이 사회에서 발화되기 어렵게 만들거나 발화되더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환경 조성’이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환경 조성 조치의 예시로서, ① (교육) 초·중고 · 대학 인권교육, 공무원 인권교육, 시민인권교육, ② (홍보) 대국민 홍보 · 캠페인을 통한 인식 제고, ③ (정책)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혐오 · 차별 대응 정책, ④ (지원) 소수자(집단)에 대한 보호 · 지원, ⑤ (연구) 혐오 · 차별 문제에 대한 조사 · 연구를 들 수 있음.²²⁾

22)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2019, p.39

제정안은 혐오표현에 대한 환경 조성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구제 책임을 지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규제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³⁾

다만, 제정안은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²⁴⁾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법무부에서 수립²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혐오표현규제기본계획의 적절한 수립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²⁶⁾

23) ○유사 입법례

-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제8조)
- 고령자의 고용촉진 기본계획(「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아동복지법」 제7조·제8조)

24) 「정부조직법」 제29조(행정각부)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5)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출하고 법무부에서 수립함.

26) 참고로, 202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에서는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혐오표현의 구제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정안 제8조는 혐오표현을 당한 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²⁷⁾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9조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10조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⁸⁾

[표-4]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8조(진정) ① 혐오표현을 당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 정 안

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혐오표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혐오표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처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사건 권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에 따라 장애인 차별, 고용상 연령차별 등 특정한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권고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²⁹⁾

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4조의7(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4.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에 관한 진정사건 권고에 대하여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시정명령 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직접 시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혐오표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혐오표현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³⁰⁾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혐오표현으로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법 및 고령자고용법은 차별행위로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① 피해자가 다수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②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③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록 제정안에 따른 혐오표현의 내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고령

3.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③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30) 참고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고령자고용법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제정안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음.

자고용법상 차별행위의 내용이 다르기는 하나, 시정명령이 강제적 이행수단인 점에 비추어 혐오표현에 관한 진정사건 권고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① ~ ③과 같은 요건을 둘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권고 주체 및 시정명령 주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고령자고용법은 권고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시정명령 주체는 법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시정명령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고령자고용법 등 현행 법 체계에서는 위법·부당한 상태의 제거·개선을 위하여 행정청이 발하는 공권력 행사인 시정명령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시정명령 주체로 규정하기 보다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³¹⁾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31)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 의 처
02)6788-5017